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연계,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등을 지원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지역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시설, 주거 전환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함(안 제24조 및 제25조).

II. 검토의견

1. “보호자” 약칭 및 인용규정 정비 관련 검토(안 제5조 등)

- 제정안 중 제5조, 제8조, 제18조, 제21조 등에서는 “장애인의 보호자”, “장애인 보호자” 또는 “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¹⁾, 관련 입법례인 「아동복지법」²⁾,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³⁾ 등과 같이 별도로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

1) 제정안

제5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가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의 보호자의 협력) 장애인의 보호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6. 14.] [법률 제20095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정안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보호자”라는 용어를 안 제5조제3항에서 약칭하여 사용하고, “발달장애인”⁴⁾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인용규정을 제정안의 규율 대상인 “장애인”으로 바꾸어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제5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u>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가</u>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 <u>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에 따른 <u>보호자</u> (이하 “보호자”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본다)가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6. 14.] [법률 제20095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나. 자폐성장장애: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요건 구체화 관련 검토(안 제7조)

- 제정안은 그 적용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정하고(안 제2조제1호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발전시킬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6조6).
- 한편, 제정안은 의료적 필요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하 “집중지원필요 장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 등을 생애주기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
- 다만, 안 제7조의 법문만으로는 다른 장애인들과 대비하여 집중 지원필요 장애인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중지원필요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구별되는

5)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1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6) 제정안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발전시킬 책임을 지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정책의 결정 및 시행과정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념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요구되는 의료적 필요도의 정도 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 관련 입법⁷⁾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제7조(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의료적 필요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u> 필요한 지원 등을 생애 주기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장애인 중 의료적 필요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u> 이 필요한 지원 등을 생애 주기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준비행위·시범사업 등 부칙 사항 관련 검토(부칙 제2조 등)

- 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통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등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사업 중 자립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은 법 시행 이후에도 안 제21조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함(안 부칙).

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23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안 부칙 제2조·제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시범사업 실시 및 시행 후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따른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의 일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각 조항을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

제 정 안	검 토 의 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제15조의 중앙통합지원센터 및 제16조의 지역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제29조의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시범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 법 시행에 따른 제21조의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5조의 중앙통합지원센터 및 제16조의 지역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제29조의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이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 법 제21조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4. 그 밖의 사항에 대한 검토

- 제정안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규정의 법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⁸⁾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은 정)

8) 제정안 제17조제6항 및 제20조제9항에서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의 상담·정보제공 업무와 자립조사·자립육구조사 업무 수행을 폭행·협박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입거부 등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38조에서 방해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의무위반 행위의 구성요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라는 법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주소지·현재지 또는 거주시설”라는 출입 거부 장소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